

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45,182,363	16,355,471
일반회계	517,596,111	15,527,883
특별회계	27,586,252	827,588
기타특별회계	27,586,252	827,588
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	1,546,811	46,404
섬진강댐특별회계	1,602,837	48,085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599,161	17,975
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	979,453	29,384
상수도사업특별회계	22,124,390	663,732
하수도사업특별회계	733,600	22,008

제 2 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「세입 세출 예산」과 같다

제 3 조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「해당없음」으로 한다

제 4 조 2022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「23,800,000천원」으로 한다

제 5 조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「6,376,564천원」과 같다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